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3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6.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골자

-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인하하여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상옥)

○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점유자·사용자와 승계자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7조제4항제9호에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유재산을 대부·사용 수익할 때 그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여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 등에 준하는 혜택(구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1,000분의10이상)을 부여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 「법」 개정(2010년 6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

※ 「**서울형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 서울시에 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 안 제36조제2항에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인하 함.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서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수준과 구유재산의 분납이자율이 4.1%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반영한 개정으로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 분납이자율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의 정기에금 수신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구유재산 대금을 분납하는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36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2항제5호는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와 그 승계자의 분납기간과 분납이자율을 규정한 것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구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분납기간을 10년 이내 하고 분납이자율도 연 4%로 조정하고 원주민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이는 재개발지역내 원주민과 그 승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용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고 재개발구역내 점유자 등에게 분할납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132 호 |
|----------|---------|

제출연월일 : 2012.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구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

나.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다.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4. 26 ~ 5. 16) : 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 반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심사완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 기함을”을 “관리를”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개최한”을 “개최할”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에 대한”을 “공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을 “시정이 필요할”로 한다.

제8조 중 “한 집단화함으로써”를 “집단화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를 계속”을 “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산은 이를”을 “재산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매각한 때”를 “매각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을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를 “사용·수익허가를 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 제3항 및 제21조에”를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의”로, “전대하는 때”를 “전대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를 “일반입찰로”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를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도”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에 대한”을 “사용수익허가에 관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대부재산에 대하여”를 “대부재산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4호 중 “외국인투자지역 안”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 대부료의”를 “대부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 대부료”를 “대부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 대부료”를 “대부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7조제5항 본문 중 “대한 대부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29조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사목 중 “마목까지에”를 각각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바목 및 제3호마목 중 “라목까지에”를 각각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라목까지에”를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3호까지에”를 “제3호까지의 규정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0조의 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를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은”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취소·해지하는”을 “취소·해지할”로 한다.

제32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4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할 때”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각하는 경우”를 “매각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할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7. 영등포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제3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연6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

제36조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연4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를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제39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한다.

제41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하려면”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는 때”를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구청장이 이를”을 “구청장이”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때”를 “경우”로, 같은 조 제2호 중 “둘 때”를 “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에서 이를”을 “예산에서”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 중 “훼손한 때”를 “훼손한 경우”로 한다.

제59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64조 중 “제조할 필요가 있는”을 “제조가 필요할”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매입할 때”로 한다.

제68조 중 “결정한 때”를 “결정한 경우”로 한다.

제70조제6호 중 “제5호까지에”를 “제5호까지”로 한다.

제71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 7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도에 대하여”를 “도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를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때는”을 “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처분하는”을 “처분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물품의 보관상 이를”을 “물품은 보관상”으로 한다.

제76조 중 “지고 이를”을 “지고”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확실한 자”를 “확실한 사람”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훼손한 때”를 “훼손한 경우”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한다.

제86조 중 “발령일로부터”를 “발령날부터”로 한다.

제88조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89조 중 “물품에 대한”을 “물품의”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분할납부를 하려면”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를 “자진반환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인”을 “사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거나, 누설하여”를 “공개하거나 누설

해”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5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p> <p>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 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 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p> <p>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 계속 ----- -----.</p> <p>② ----- 재산은 ----- -----.</p> <p>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 ----- 매각한 경우 ----- -----.</p>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을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 할 ----- ----- 대해서는 ----- -----.</p> <p>② ----- ----- 사용·수익허가를 ----- -----.</p> |

| 현행 | 개정안 |
|---|--|
| <p>1. 2. (생략)</p> <p>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자</p> | <p>1. 2. (현행과 같음)</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 -----.</p> <p>② ----- ----- ----- ----- <u>대해서</u> ----- ----- -----.</p> <p>③ ----- ----- <u>재산</u> ----- 의 ----- <u>전대</u> ----- <u>하는 경우</u>----- ----- -----.</p> <p>④ ----- ----- ----- <u>필요한</u> ----- -----.</p> <p>⑤ <u>일반입찰로</u> ----- -- <u>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u> --- ----- -----.</p> <p>⑥ ----- <u>제4항까지에도</u> -----</p> |

| 현행 | 개정안 |
|--|--|
| <p>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u>사용수익허가에 대한</u>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u>대부재산에 대하여</u>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u>기타</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p> <p>1. ~ 3. (생략)</p> <p>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u>외국인투자지역</u> 안의 공유재산</p> <p>5.·6. (생략)</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u>대한</u>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 <p>----- -----.</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수익허가에 관한</u> ----- ----- -----.</p> <p>제23조(연고권 배제) ----- ----- <u>대부재산은</u> ----- ----- -----.</p> <p>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 ----- ----- ----- <u>그</u> ----- ----- <u>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외국인투자</u> ----- ----- <u>지역</u> -----</p> <p>5.·6. (현행과 같음)</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대부료</u> ----- ----- -----.</p> |

| 현행 | 개정안 |
|---|---|
| <p>1. ~ 3.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u>대부료</u>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u>대부료</u>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u>규정에</u>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3. ~ 8. (생략)</p> <p><u><신설></u></p> <p>⑤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 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u>대부료</u>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p> |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대부료-----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대부료----- ----- -----.</p> <p>1. (현행과 같음)</p> <p>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p> <p>3. ~ 8. (현행과 같음)</p> <p>9.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⑤ ----- ----- 대부료----- ----- -----. ----- ----- ----- ----- ----- -----.</p> <p>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생 략)</p> <p>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u>심히</u>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u>사항에</u>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⑥ (생 략)</p> <p>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u>의하여</u> 산출한다.</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p> <p>1. (생 략)</p> <p>가. ~ 마. (생 략)</p> <p>바. 가목부터 <u>마목까지</u>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p> <p>사. 가목부터 <u>마목까지</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생 략)</p> <p>가. ~ 라. (생 략)</p> <p>마. 가목부터 <u>라목까지</u>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p> | <p>(현행과 같음)</p> <p>⑤ ----- ----- 매우 ----- ----- ----- ----- <u>사항의</u> ----- -----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 ----- ----- ----- 따라 -----.</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마목까지</u> ----- ----- -----</p> <p>사.----- <u>마목까지</u> ----- ----- ----- -----</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라목까지</u> ----- -----</p> |

| 현행 | 개정안 |
|--|--|
| <p>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부터 <u>라목까지</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생략)</p> <p>가. ~ 라. (생략)</p> <p>마. 가목부터 <u>라목까지</u>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는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부터 <u>라목까지</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사. 제26조제1호부터 <u>제3호까지</u>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p> <p>②·③ (생략)</p> <p>④ 영 제30조의제2항의 <u>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u>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④ (생략)</p> <p>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u>취소·해지하는 때에는</u>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p> | <p>-----</p> <p>바.----- <u>라목까지</u> -----</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라목까지</u> -----</p> <p>-----</p> <p>-----</p> <p>바.----- <u>라목까지</u> -----</p> <p>-----</p> <p>-----</p> <p>사.----- <u>제3호까지의 규정</u> <u>에</u>-----</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30조제2항의 <u>생산·연구시설은</u> ----- -----.</p> <p>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취소·</u> <u>해지할</u> -----</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p> <p>-----</p> |

| 현행 | 개정안 |
|--|--|
| <p>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u>대하여</u>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 <p>----- ----- ----- <u>대해서</u> ----- -----.</p> |
|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4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 <p>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u>연 4퍼센트</u>----- ----- -----</p> |
| <p>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u>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할 때</u></p> | <p>1. ----- ----- ----- <u>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u> -----</p> |
| <p>2. (생략)</p> | <p>2. (현행과 같음)</p> |
|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u>매각하는 때</u></p> | <p>3. ----- ----- ----- <u>매각할 때</u> -----</p> |
|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영등포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영등포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u>매각하는 경우</u></p> | <p>4. ----- ----- ----- ----- ----- ----- ----- ----- ----- ----- ----- <u>매각할 때</u> -----</p> |
| <p>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u>매각하는 때</u></p> | <p>5. ----- ----- ----- <u>매각할 때</u>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p> <p>2.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 <p>6.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p> <p>7. 영등포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p> <p>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p> <p><u><삭 제></u></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p> |

| 현행 | 개정안 |
|--|---|
| <p>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p> <p>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 3. (생략)</p> <p>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영등포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영등포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p> | <p><u>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u>)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p> <p>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p> <p>1. 2003년 12월 31일 ----- -----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 ----- ----- 2003년 12월 31일 ----- ----- ----- ----- ----- ----- ----- ----- ----- ----- -----</p> |

| 현행 | 개정안 |
|---|--|
| <p>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u>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u>할 수 있다.</p> | <p>----- ----- <u>한정</u> <u>하여 위 매각범위</u>-----.</p> |
| <p>5. 영등포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u>매각하는 때</u></p> | <p>5. ----- ----- -- <u>매각하는 경우</u></p> |
| <p>6.·7. (생략)</p> | <p>6.·7. (현행과 같음)</p> |
| <p>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u>경우에 있어서</u>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 <p>제39조(신탁의 종류) ----- ----- <u>경우에</u> ----- ----- -----.</p> |
| <p>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경우에 한하여</u>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 <p>제41조(처분의 제한) ----- ----- <u>경우</u> <u>에만</u> ----- -----.</p> |
| <p>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u>의하여</u>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 <p>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 <u>따라</u> ----- -----.</p> |
| <p>②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략)</p> | <p>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p> |
| <p>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u>등에 대하여는</u>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p> | <p>② ----- ----- ----- <u>등은</u>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 (생략)</p> <p>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p> <p>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u>구청장이</u>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u>그 밖의</u>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p>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u>예산에서</u>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략) <p>제57조(인계 인수 등) ①·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 <p>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p> | <p>③ (현행과 같음)</p> <p>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신축하려면 ----- 범위----- ----- -----.</p> <p>② ----- ----- 추진하는 경우----- -----.</p> <p>제50조(사용허가) ----- ----- <u>구청장이</u> ----- -----.</p> <p>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우 2.----- 둔 경우 3.----- ----- 경우 4.<u>그 밖에</u>----- ----- 경우 <p>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u>예산에서</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p>제57조(인계 인수 등) ①·②(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제58조(변상조치) -----</p> |

| 현행 | 개정안 |
|--|---|
| <p>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 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 <p>----- ----- ----- ----- <u>훼손한 경우</u> ----- -----.</p> |
| <p>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제59조(준용) ----- 대 <u>해서</u>----- -----.</p> |
| <p>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관리관은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u>제조할 필요가 있는</u>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p> | <p>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u>제조가 필요할</u> ----- ----- -----.</p> |
| <p>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관리관이 제64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 <p>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 ----- <u>한</u> ----- <u>경우</u>----- ----- ----- -----.</p> |
| <p>②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생략)</p> | <p>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p> |
|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u>매입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p> | <p>② ----- <u>매입할 때</u> ----- ----- -----.</p> |
| <p>제68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u>결정한 때</u>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제68조(분류전환) ----- ----- <u>결정한 경</u> ----- <u>우</u>----- -----.</p> |
| <p>제7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p> | <p>제70조(물품의 가격) ----- -----.</p> |

| 현행 | 개정안 |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전적가격 | 6. ----- 제5호까지 ----- ----- ----- |
| 7. (생략) | 7. (현행과 같음) |
| 제71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71조(잔품의 이월) ----- ----- <u>대해서</u> ----- ----- ----- . |
|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7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 ----- <u>하는</u> <u>경우</u> ----- ----- .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u>수선을 요하는</u>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7. <u>수선이 필요한</u> ----- ----- |
| 8. (생략) | 8.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 <u>물품은</u> ----- ----- . ----- <u>물품에는</u> ----- ----- .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3. <u>수선을 요하는</u>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3. <u>수선이 필요한</u> ----- ----- |
| 4.·5. (생략) | 4.·5.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 ③ ----- ----- <u>관할구역</u> ----- |

| 현행 | 개정안 |
|--|--|
| <p>래 실패가격에 <u>의하여</u> 결정한다.</p> <p>⑥ (생략)</p> <p>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u>경우에 있어서</u>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제74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5조(보관의 구분) ① <u>물품의 보관상</u>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p> <p>② (생략)</p> <p>제76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영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영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u>지고</u>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77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u>기타</u> 신용이 <u>확실한</u>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9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생략)</p> | <p>----- 따라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u>경우에</u> ----- ----- -----.</p> <p>⑧ (현행과 같음)</p> <p>제74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하는 <u>경우</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5조(보관의 구분) ① <u>물품은 보관상</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6조(보관책임) ----- ----- ----- ----- ----- <u>지고</u> -----.</p> <p>제77조(일시보관) ① ----- ----- ----- ----- <u>그 밖에</u> ----- <u>확실한 사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9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략)</p> <p>1. (생략)</p> <p>2. 물품을 <u>훼손한 때에는</u>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p> <p>② (생략)</p> <p>제8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략)</p> <p>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u>대하여</u>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83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보건소·동의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경우에는</u>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3조에 따른 검사를 <u>함께</u>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u>지정한 자로 하여금</u> 입회하게 한다.</p> <p>② (생략)</p> | <p>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훼손한 경우</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대해서</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3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인정하면</u> ----- ----- -----.</p> <p>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u>할 때</u> ----- ----- ----- ----- <u>사람으로</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p> <p>제85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3조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u>한</u>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8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u>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u>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제88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u>자로</u> 하여금 제8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89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물품관리관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u>물품에 대한 정리계획</u>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p> | <p>③ ----- ----- <u>대해서</u> ----- ----- -----.</p> <p>제85조(물품검사서) ① ----- ----- <u>한 경우</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u>발령날부터</u> ----- ----- -----.</p> <p>제88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 ----- ----- ----- <u>사람으로</u> ----- ----- -----.</p> <p>제89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 ----- ----- <u>물품의</u> ----- ----- -----.</p> <p>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제9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9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 -----.</p> <p>제95조(준용) ----- ----- 대해 서----- -----.</p> <p>제96조(시행규칙) ----- 시행에 ----- -----.</p> |